

3. 포항가속기연구소 보수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0조(시간외 및 휴일근무) ① 시간외 및 휴일근무는 연구소 시간외 근무 운영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.</p> <p>②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(부서장)의 승인을 얻어 법정 시간외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</p> <p>③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근무</p> <p>2. 국가가 요하는 비상근무 및 이와 유사한 소집으로 인한 근무</p> <p>3. 당직 및 대기발령기간 (이전)</p>	<p>제20조(시간외 및 휴일근무) 시간외 및 휴일근무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</p> <p>1.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(부서장)의 승인을 얻어 법정 시간외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</p> <p>2.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근무</p> <p>나. 국가가 요하는 비상근무 및 이와 유사한 소집으로 인한 근무</p> <p>다. 당직 및 대기발령기간</p> <p>3. 기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 '시간외 근무 운영기준'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.</p>	<p>우선 규정 명확화</p> <p>: 현재는 2항과 3항의 내용보다 1항의 내용이 우선된다고 해석이 될 수 있어</p> <p>우선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세칙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p>	<p>승인일로부터 시행</p>